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09548 판결 [건물철거,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095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42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9. 12.

판결선고 2024. 10. 3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42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임야 186㎡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감정서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축물 131㎡를 철거하고, 위 임야를 인도하고, 49,54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3. 7. 1.부터 위 임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철거 및 인도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쪽 제15줄 ‘매입을’을 ‘건물 매입을’로 고치고, 제2쪽 제19줄부터 제3쪽 제8줄까지를 삭제하고, 제3쪽 제9줄 ‘3.’을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금전 지급 청구 부분 외에,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화, 판사 오재성, 판사 박양준

별지